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www.grccp.or.kr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복지 가이드북



발간사

강서뇌성마비복지관은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뇌성마비장애인 전문복지관으로 상담, 교육, 의료, 가족 및 직업지원, 보조공학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뇌성마비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복지관 상담사례지원팀에서는 뇌성마비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뇌성마비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뇌성마비장애자녀를 둔 부모부터 지역사회 내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누리고자하는 성인 뇌성마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이 성장하고 자립하는 과정에는 교육 및 의료, 정서적지원, 경제 적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욕구와 필요성에 비해 개인 이 필요한 복지자원을 검색하고 발굴하는 과정에는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또 한 최근 많은 복지정보들이 책으로 발간되고 있으나, 전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 거나 특정 일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북이다 보니 뇌성마비장애인 과 가족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들이 실 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의 복지증진 과 정보접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주신 가톨릭대학교 박희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이드북 제작을 위해 힘써준 본 복지관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 각자 가 맡은 전문영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뇌성마비복지관장

박세영



1장 뇌성마비장애란?

- 08 뇌성마비의 정의
- 08 뇌성마비의 원인
- 08 뇌성마비의 유형
- 10 뇌성마비의 치료
- 12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2장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 22 장애등록절차
- 23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긴급복지지원제도 / 자선형성지원사업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33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장애검사비 지원 /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 장애인 보장구 급여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 임신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출산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영양플러스 / 영유아 건강검진
- 40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아 보육료 지원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급식비 지원 / 고등학교 학비 지원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 장애인 정보화 교육 /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 48 직업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자활근로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지원 /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 근로지원인 지원

2장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 52 주거지원서비스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 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매입임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취약계층 주거지원 /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 에너지바우처 /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 주거복지지원센터
- 60 일상생활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 양곡할인 / 무료법률구조제도 / 사랑의그린PC 지원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 65 각종 감면 제도
방송요금 / 통신요금 / 교통비 / 자가용자동차관련 / 각종공공요금 / 문화활동비 / 과태료 / 기타
- 66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 보조기기센터
- 68 스포츠·문화여가활동
장애인 체육종목 / 주요 스포츠 종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 관광지 안내 /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통합문화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3장 복지시설 / 재활병원 / 교육기관 안내

- 74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자립생활주택 /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 83 재활병원
재활병원 / 장애인치과
- 87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전담 어린이집 / 특수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Part 1.

뇌성마비 장애란?

뇌성마비의 정의 / 뇌성마비의 원인

뇌성마비의 유형 / 뇌성마비의 치료

뇌성마비장애인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 박희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뇌성마비장애란?

뇌성마비의 정의¹⁾

- 뇌성마비(cerebral palsy, CP)는 어린 아이들에게 영구적인 운동장애를 남기는 비진행성 질환을 뜻하며, 미성숙한 뇌에서 발생하게 된다.
- 이는 운동, 자세 및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장애를 포괄하는 용어로, 출생 전, 출생 중 또는 출생 후 몇 년 이내에 일어나는 뇌손상에 의해 발생된다. 이때 손상은 근육이나 척수에 연결된 신경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근육을 조절하는 뇌에서 일어난 것을 말한다.
- 뇌손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련, 언어장애, 학습장애, 시력 및 청력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일컫는다. '뇌성마비=뇌병변장애'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뇌성마비 또한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하나의 장애유형이다.




뇌성마비의 원인²⁾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의 원인

조산 및 저체중은 뇌성마비 발생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임신 37주 이전에 분만한 신생아를 조산아라고 하며, 뇌성마비의 약 50%가 조산아에서 발생한다. 조산아에서의 뇌성마비는 뇌조직의 미성숙과 자궁내 감염/염증반응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에 의하며, 이미 이러한 위험인자에 노출된 조산아에서 출생 전후 폐 미성숙에 의한 저산소성 환경, 고농도 산소치료, 기계보조환기에 따른 2차 손상이 보다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삭 출산아 뇌성마비의 원인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뇌의 손상이 어느 시기에 일어났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원인에 따라서는 정확히 언제 뇌손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출산 전 원인	태아가 자궁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유전적 이상, 선천성 감염, 선천성 뇌병변
	주산기 원인	분만 과정이나 분만 직후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분만 진통 중 저산소증
	출산 후 원인	분만 후 신생아 시기에 뇌성마비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 예) 핵황달

뇌성마비의 유형³⁾

생리학적 유형에 따른 분류

경직형(Spastic type)

경직성(spasticity)이란 환자의 관절을 빠른 속도로 구부리거나 펴면서 근육의 길이를 늘일 때,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근육이 잘 늘어나다가 갑자기 근육이 굳어지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근

육의 긴장성이 증가되어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2/3가 경직성으로 분류된다. 경직성이 있는 환아에서는 상부운동신경원 증후군(upper motor neuron syndrome) 형태로 나타나 바빈스키(Babinski) 반응이 양상으로 보이며, 반사항진(hyperreflexia), 간대상 경련(clonus), 하지 굴곡근이나 상지 신전근의 약화 등을 보인다. 이러한 경직성 및 변형에 대해 물리치료, 석고고정, 바클로펜(baclofen), 보툴리눔 독소 주사(botulinum toxin-type A), 선택적 척수 후근 절제술(selective dorsal rhizotomy, SDR), 정형외과적 수술 등의 치료를 할 수 있다.

근긴장이상형(Dystonic type)

대뇌기저핵(basal ganglia)의 이상이 주된 병변으로 수의운동(voluntary movement)이나 자세 유지 시 사지, 목, 안면 등을 지속적으로 불규칙하게 뒤틀거나 꿈틀거리는 불수의운동(involuntary movement)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1/4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수의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긴장하면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해지며, 수면시에는 소실된다. 근긴장이상형은 경직형에 비해 수술적 치료의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술적 치료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운동실조형(Ataxic type)

평형감각장애와 협동운동장애 등 소뇌의 기능장애로 오는 증상으로 뇌성마비 환자의 1% 미만이며, 근긴장이상형에서 나타나는 불수의운동은 없고, 보행 시 잘 나타난다. 심부건반사는 정상이거나 저해되며 관절구축은 드물고, 구르기, 앉기, 서기, 걷기 등 소아의 발달이 늦어진다. 운동실조형은 경직형 사지마비와 구별해야하는데 운동실조형 환아는 성장함에 따라 증상이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기 때문이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다.

혼합형(Mixed type)

상기 2종류 이상의 유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혼합형이 10% 정도 있으며, 대부분 경직형에 준하여 치료를 하게 된다.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편마비(Hemiplegia)

편마비는 뇌성마비 환자의 약 30%를 차지하며, 같은 쪽의 상지와 하지가 이환되는 형태이다. 마비 증상은 몸통 근처 부위보다는 몸통과 먼 쪽 부위에서 더 심한 양상을 보이며, 상지에서는 50~60%의 감각 결손이 있고 주로 고유감각(위치감각, 압박감각, 운동감각, 진동감각 및 심부지각의 총칭)장애가 나타난다. 또한 집중력 결의의 빈도가 높고, 사시나 반맹증(바라보는 점을 경계로 하여 시야의 왼쪽 절반이나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는 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정상인보다 시기는 늦을 수 있지만 거의 모든 환아가 보행이 가능하다. 대개 정상 지능을 가지며 성인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양측마비(Diplegia)

양측마비는 주로 하지를 침범하며, 양측이 대칭적이다. 상지의 이환도 있으나 하지에 비해서 증상이 경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경한 증상이라도 상지에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신 마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양측마비는 대부분 조산아에게서 나타나며, 제3뇌실 주위의 출혈과 관계가 있다. 백질연화증(미숙아의 뇌실주위에서 자주 나타나는 병리소견으로, 산소 결핍으로 뇌실 주변의 백질부위가 괴사된 것)의 소견을 볼 수 있다.

1) 정진엽 외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4 / 일레인 게라리스 외13명, 뇌성마비 아동의 이해, 시그마프레스 P2
2) 정진엽 외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3 /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13
3) 정진엽 외17명, 알기쉬운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6 /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37

뇌성마비의 치료⁴⁾

사지마비(Quadriplegia)

양측 상지와 하지 모두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형태로, 해부학적 부위에 따른 분류 중 가장 심한 형태이다. 저산소, 혹은 무산소증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경련성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약 75%의 환아에게서 지능저하가 나타난다.

침흘림, 연하장애, 발음장애 등이 동반되며, 2차적으로 영양결핍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보행은 힘들며, 성장기간 중 척추 측만증 및 고관절 탈구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과 시기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고도의 사지마비는 보행보조기를 사용해도 보행이 어려우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도의 사지마비 환아들의 주된 치료 목표는 통증 없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이동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리치료(Physical Therapy)

물리치료란, 운동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치료를 통칭하는 용어로, 뇌성마비 아동에게는 필수적이다. 사전적 의미의 물리치료는 열이나 얼음, 공기, 광선, 전기, 전자기파, 초음파, 기계적인 힘, 중력 등을 이용하여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조직의 치유를 촉진시키고, 신체의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등 특정한 목적의 치료 효과를 얻고자 하는 기술을 말한다. 그러나 뇌성마비에게 물리치료는 비정상적인 자세에서 보이는 근 긴장의 정상화를 원칙으로 하며, 비정상적인 반사작용을 감소시키고 정상적인 자세반응을 경험하게 하여 머리와 몸통의 정상적인 발달순서를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경직형 아동은 절가동범위를 확대하여 구축의 위험성을 줄이고, 무정위형 아동은 근위부를 안정시켜 정중선 유지 및 대칭성 자세 유지 능력을 향상시킨다. 균형과 수의적인 움직임을 증진시켜 아동이 스스로 자세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는 주로 상지의 동작에 초점을 맞추며, 미세동작 호전을 통해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뇌성마비 아동이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눈-손 협응 능력, 적절한 자세, 물체를 조작하는 기술 등이 필요하고, 물건을 쥐거나 조작하기에 앞서 무엇인가가 손에 닿았을 때 느낌이 즐거워야 한다. 작업치료를 통해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학습, 놀이 등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킨다.

언어치료(Speech language Therapy)

뇌성마비 아동은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하여 호흡에서 조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관에 문제를 보이면서 전체 아동의 75~85%가 언어장애를 보인다(Love&Webb,2001). 뇌성마비가 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현되는 장애이므로 치료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으나, 다분야적인 접근을 통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꾀한다. 주로 자세, 호흡, 발성, 조음 등의 치료가 진행된다.

스노젬렌치료(Snoezelen Therapy, 심리안정치료)

스노젬렌은 학문적으로 “콩콩거리며 땀새 맡는 것”과 “구벽구벽 조는 것”이라는 뜻의 네덜란드어를 합성한 것으로, 부드러운 음악이 들리고 은은하면서 매혹적인 빛이 나는 공간 또는 그 안에서 행하는 치료 활동을 말한다. 스노젬렌치료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격리수용, 보호, 관리하던 관점에서 변화하여 그들도 만나는 사람, 접하게 되는 사물에 대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한데에서 출발하였다. 스노젬렌치료는 뇌손상 환자 및 치매환자, 만성 통증 환자 등 심리적 이완이 요구되는 성인 및 중증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바스치료(Bobath Therapy, 신경발달치료)

보바스치료의 기본개념은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를 관절운동, 자세잡기, 정상 운동패턴 촉진 등을 통해 정상화시키고, 비정상적 원시반사를 억제하며, 자동반응을 촉진하여 운동 양상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치료는 몸통 부위(근위부)에 있는 ‘키 포인트 조절점’에서 시작된다. 키 포인트는 움직임이 시작 되는 머리, 목, 척추, 어깨나 골반 등에 위치한다. 대부분 비슷한 키 포인트를 바탕으로 치료하는데, 조절점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방법은 각각 개인별로 다르다.

보이타치료(Vojta Therapy)

신체의 일정부위를 자극함으로써 고유감각 자극을 주어 반사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상적 이동 동작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자극을 통해서 반사적 뒤집기(reflexturning)와 반사적 기기(reflexcreeping)를 유발하는 방법을 쓴다. 주로 1세 이하 영아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나, 경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악화시킬 수 있고, 치료 과정 자체도 뇌성마비 아동에게 힘든 경우가 많다.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신체와 환경의 여러 감각 정보를 뇌에서 조절하는 과정을 감각통합이라 하며, 이를 통해서 신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치료법이다. 전정(vestibular), 위치(proprioceptive) 및 촉각(tactile)이 특히 학습과 운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감각의 통합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학습, 행동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감각통합치료의 목적은 특정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의 인지, 기억, 운동 계획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뇌성마비 아동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래 학습장애 및 자폐증 치료에서 시작되었으므로 뇌성마비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수치료(Aquatic Therapy)

수치료란, 말 그대로 물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체중 부하가 적은 상태에서 자세 유지, 관절 움직임, 유산소 운동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로, 특히 재활의학 분야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치료법이다.

승마치료(Hippo Therapy)

1950년대에 소아마비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비교적 최근 뇌성마비 아동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승마를 통해 근 긴장도, 균형, 몸통 조절 등을 호전시킬 수 있고, 치료 매개 동물인 말과의 교감을 통해 정서적인 도움도 된다는 가정하에 시작 된 치료이다.

연하치료(Deglutition Therapy)

연하치료란, 씹고 삼키는 능력의 손상으로 연하곤란에 대한 원인 분석과 식이조절 및 자세 조절을 통한 치료적 접근방법이다. 삼키는 음식을 구강에서 위까지 이동시키기 위하여 50가지 이상의 신경 및 근육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정상적인 삼킴 시에는 액체나 음식물이 기도 혹은 폐 내로 진입하지 않도록 호흡과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만약, 신경이나 근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질환으로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효과적으로 음식을 삼키지 못하며,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폐렴을 일으키거나 아예 기도를 막아서 질식이 되는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삼키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연하장애 또는 연하곤란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연하치료이다.

심리치료(Psychology Therapy)

심리치료란,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치료법이다. 뇌성마비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사회 경험의 폭이 제한되며, 이것이 아동시기 발달 및 사회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는 2차적 손상인 통증으로 인한 강박증, 예민성, 불안, 우울 등 부정적 감정 상태 및 사회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심리치료 필요하다. 심리치료의 종류는 다양하며, 미술, 놀이, 음악 등이 있다.

4) 정진엽 외31명, 뇌성마비, 군자출판사 P235 / 김향희, 신경언어장애, 시그마프레스 P398

뇌성마비장애인의 출현율 연구의 동향과 과제*

박 희 찬
가톨릭대학교 특수교육과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뇌병변장애의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이 시행령 별표1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뇌성마비가 뇌병변장애의 한 원인으로 간단히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이 용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뇌병변장애만 제시되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나 특수교육 관련법에서는 지체부자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이 뇌성마비를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었다. 뇌성마비인은 1982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체부자유자에 포함되었다. 1990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별표1에서 기존의 지체부자유자가 지체장애인으로 개정되어 뇌성마비인은 지체장애인에 포함되었다. 199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별표1에서 지체장애는 그대로 존치되면서 뇌병변장애가 장애 유형의 하나로 추가되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1977년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지체부자유가 특수교육대상의 한 유형으로 명시된 이래 뇌성마비는 이 지체부자유에 포함되어 왔다. 그 후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기존의 지체부자유를 지체장애로 용어를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는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 관련법에서 뇌성마비가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에 포함될 결과, 뇌성마비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특수교육 및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독특한 장애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교육부의 특수교육통계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 자료나 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교육부, 2016), 보건복지부

에서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나 정보는 거의 없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그런데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내지 지체장애에 포함되기보다는 그 자체로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장애인복지법에서 뇌병변장애인의 병변으로 구분된 뇌성마비는 외상성 뇌손상이나 뇌졸중과 과연 어느 정도 유사성이나 차별성이 있는가? 지체장애 학생의 78.5%가 뇌성마비임에도(국립특수교육원, 2014) 불구하고 뇌성마비 그 자체에 대한 정보, 자료,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뇌성마비는 뇌졸중과 함께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 그 장애가 개인의 삶이나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뇌성마비와 뇌졸중은 발생 시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다르다. 뇌성마비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는 시점이 대부분 선천적이거나 생후 2년 이내이다. 예를 들면, 호주에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신생아는 2,320,138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뇌성마비인은 5,160명으로 출현율은 약 2.2%였다. 이들 5,160명 중 출생전이나 출생 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는 4,817명(93.4%)이며, 출생 후 발생한 사례는 343명(6.6%)로 나타나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출생 후에도 대체로 2세 이전에 발생하는 특성이 있었다(ACPR, 2013).

반면에 뇌졸중의 경우, 대체로 55세 이후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 약 3/4이 65세 이후에 발병한다(http://www.strokecenter.org/). 우리나라의 2014 장애인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연령별 주된 진단명을 살펴보면, 10-19세 연령대에서 뇌성마비인의 비율은 51.3%인데 비하여 뇌졸중장애인의 비율은 5.2%였으며, 50-59세 연령대에서는 뇌성마비인의 비율은 9.2%인데 비하여 뇌졸중장애인의 비율은 70.5%였다.

뇌성마비인은 90% 이상이 출생전이나 출생 시 장애가 발생하여 인간의 발달기 동안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1975년 발달장애 원조 및 권리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of 1975)이 제정된 당시부터 뇌성마비가 발달장애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뇌졸중의 경우 뇌성마비와 기능상에서 유사한 점이 없지 않으나 발달장애와는 전혀 무관하며, 발달기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뇌성마비가 대부분 선천적 혹은 출생 후 2년 이내에 발생하고, 발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기 중재가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병변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이러한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등 국가 차원의 뇌병변장애인 조사결과는 뇌병변장애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뇌졸중과 뇌손상장애인에 대한 데이터의 영향으로 인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특성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

하는 현상마저 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뇌성마비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나 지원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었다(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2015).

외국의 경우, 뇌성마비 발생 원인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주제로 인정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뇌성마비인의 출현율 및 등록,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연구가 호주(ACPR, 2013; Stanley & Watson 1992), EU(Cans, 2002; Germany et al., 2013; Virella et al., 2016), 아일랜드(Cussen et al., 1978; Mongan, Dunne, O’Nuallain, & Gaffney., 2006), 덴마크(Froslev-Friis et al., 2015; Glenting 1982), 스웨덴(Hagberg, Hagberg, & Olow, 1975; Himmelmann, Hagberg, & Uvebrant, 2010), 노르웨이(Hollung, Andersen, Wiik, Bakken, & Vik, 2015; Meberg, 1990), 영국(Blackburn, Read, & Spencer, 2012; Jarvis, Holloway, & Hey, 1985; Pharoah, Cooke, Rosenbloom, & Cooke, 1987), 프랑스(Cans, Billelte, & Fauconnier, 1996; Johnson & King, 1989; Levy et al., 2006), 미국(CDC, 2012; Hurley et al., 2011; Yeargin-Allsopp et al., 2008) 등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의, 판정 절차, 실태조사, 실태조사에 기반을 둔 교육 및 복지 정책 방향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성마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가장 기초적인 자료 및 연구주제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뇌성마비인 출현율(prevalence)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현율은 통상적으로 숫자를 제시된 후 비율로 표시되는 데, 예를 들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특정 주어진 시점과 특정 지역에서 뇌성마비인이 모두 몇 명이며, 그 숫자는 전체 연구 수에 비하여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http://www.cerebralspalsy.org). 이 출현율은 특정 기간 안에 뇌성마비인이 몇 명이 발생하였는가에 초점을 두는 발생율(incidence)과는 다른 개념이다.

출현율은 장애를 이해하고 중재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이승희, 2012). 출현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장애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는 장애인에 대한 치료 및 교육, 전반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정책과 장애에 대한 예방과 연구 수행 방안에 대한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인을 위한 치료, 교육, 재활서비스 제공, 정책 마련, 연구 등의 기초가 될 수 있으며, 뇌성마비 분야의 학문 발전과 현장에서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에 대한 합의된 개념 정립, 뇌성마비를 진단하고 장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마련, 진

* 본 자료는 한국지체 중북 건강장애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지체 중북 건강장애연구, 제59권 제4호에 실린 논문을 일부 수정하여 재게재한 것이며, 표, 그림, 참고문헌 등은 원논문에서 참고할 수 있음.

단평가를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 구비, 뇌성마비인의 등록 시스템 구축 등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다수 있어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연구의 현재 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국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연구 실태를 제시한다. 둘째,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연구 동향을 제시한다. 셋째,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국내 및 국외 문헌연구이다. 첫째로 우리나라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연구를 위한 문헌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뇌성마비 또는(OR) 뇌병변을 주제로 학위논문 및 국내 학술지 논문을 1차로 검색하였고, 결과 내 재검색으로 출현율을 주제로 2차 검색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 등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Google에서 뇌성마비 및 뇌병변을 주제로 검색하여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뇌성마비 관련 연구과제 또는 실태조사 등을 파악하고 이 연구와 관련된 내용을 탐색하였다. 아울러 국가에서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실태조사, 특수교육실태조사 보고서도 문헌에 포함하였다.

둘째로 국외 문헌은 Smith-Sheedy 등(2009)의 뇌성마비 등록에 관한 국제 조사에 근거하여 국가명(Australia,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장애명(cerebral palsy), 출현율(prevalence)을 주제로 C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DB 통합검색 및 Google 검색을 통하여 관련 학술논문 및 보고서 등의 자료를 선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호주의 뇌성마비등록(<https://www.cpregister.com/>), 뇌성마비연맹(<https://www.cerebralpalsy.org.au/>), EU의 뇌성마비감독(<http://www.scpenetwork.eu/>), 미국의 질병통제 및 예방센터(<http://www.cdc.gov/>)와 뇌성마비연구등록(<https://www.cpregistry.org/>) 등의 웹사이트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자료를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실태

뇌성마비 판정기준

뇌성마비인 출현율은 장애에 대한 정의, 판정기준이나 도구, 조사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 판정기준은 별도로 없고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어 있다.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일부로 되어 있다.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장애의 진단은 마비의 정도 및 범위, 팔 ·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게 된다.

뇌병변장애에 대한 진단에서 사용되는 자료의 하나가 수정바델 지수이다(정한영, 박병규, 강윤규, 편성범 외, 2007). 이 지수는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중심이 된 척도이므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의 제약 정도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뇌성마비에 대한 판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며 뇌병변 장애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고, 다만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대운동기능 분류시스템이나 대운동기능을 참고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장애인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장애인구수 및 장애 출현율을 파악하고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뇌성마비인의 수 및 출현율에 대하여 이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에서는 가구 및 장애판별조사와 장애인 심층조사로 구분되는 데, 장애인 심층조사에는 장애유형별 장애특성, 보건 · 의료 · 건강, 일상생활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육, 취업 및 직업생활, 사회 및 문화 · 여가활동, 결혼생활/여성장애인, 생활만족도 및 폭력 · 차별경험, 주거, 복지서비스, 경제상태 등을 질문하여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게 된다.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특성과 관련하여 장애 여부, 장애부위 및 마비 정도, 동반장애 유무, 최초장애발생시기, 주된 장애 원인, 주된 진단명(뇌성마비의 경우 출생 장소, 출산방법)을 조사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사에서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하였다. 뇌성마비에 대한 출현율 조사 결과는 제5장 장애 출현율 및 장애인구수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도 우리나라 장애인 수는 2,726,9000명이며, 장애인 출현율은 5.59%로 추정하였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출현율은 0.48%, 추정수는 234,675명이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이는 주장애가 뇌병변장애인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이 조사 보고서의 134쪽에서 또 다른 출현율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중복장애로 뇌병변장애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출한 자료로서 출현율이 0.62%, 추정수는 302,362명이었다.

이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인에 대한 자료가 제시된 것은 여기가 유일하다. 전체 연령으로 볼 때,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의 8.2%를 차지하며, 구성 비율의 순서로는 69.5%인 뇌졸중, 11.2%인 뇌손상 다음이다. 이러한 비율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 전체 뇌병변장애에서 뇌성마비인은 비율이 0~9세에는 20.0%, 10~19세에는 51.3%, 20~29세에는 34.5%, 30~39세에는 42%, 40~49세에는 25.5%였다.

이 실태조사에서의 결과에 의하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뇌병변장애인 출현율인 0.62%의 8.2%에 해당하므로 0.051%로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뇌성마비인 출현율 0.051%는 뇌성마비 관련 국외 전문 논문이나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성마비 출현율인 0.2~0.3%에 비하여 1/4 이하로 낮은 비율이다.

특수교육실태조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교육 과정 및 방법 모색, 교원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있다. 이 특수교육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특수학교(급) 관리자 및 교사들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및 교육과정, 서비스, 재정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최근 2014년에 실시된 특수교육실태조사(국립특수교육원, 2014)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원인, 장애특성을 조사하였다. 뇌성마비는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실태가 조사되었으며 전체 지체장애인 10,814명 중 8,491명으로 78.5%였다. 그 외의 지체장애 유형으로는 근이양증 5.8%, 척추손상 3.2%, 경련장애 2.1% 등이 있었다. 따라서 특수교육실태조사를 통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

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뇌성마비인을 위한 교육이나 재활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출현율 선행연구

뇌성마비인의 출현율과 관련된 국내의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찾기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면, 2016년 4월 현재 한국학술정보서비스(RISS) 통합검색에서 키워드 ‘뇌성마비’로 검색된 학위논문은 919개, 국내학술지 논문은 1,410개였으나, 결과 내 검색에서 키워드 ‘출현율’로 재검색하면 학위논문 3개, 국내 학술지 논문 1개가 있었다. 그러나 이 4개의 연구들도 뇌성마비 출현율을 주목적으로 수행한 연구가 아니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이명희, 유명준, 백은령, 최복천, 김기룡, 2011),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 및 가족 지원방안 연구(최복천, 이명희, 임수경, 조혜희, 2013), 뇌병변장애인 지원서비스 현황 분석 및 지원 정책 방향 연구(박희찬, 박은영, 박세영, 2015) 등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을 중심으로 한 학술연구는 찾을 수 없다. 이는 출현율에 대한 정서행동장애(이승희, 2012), 자폐성장애(정동영, 김형일, 정동일, 2003), 학습장애(강위영, 정대영, 1986; 여승수, 2013), 청각장애(최성규, 1997), 언어장애(송윤경, 2010) 등 타 장애영역에서 출현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상과 같이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외국에서의 관련 연구 동향을 심도 있게 고찰하여 향후 국내에서의 연구 수행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애의 정의, 판정 절차, 도구, 데이터 수집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외국에서의 사례는 이러한 전반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

유럽

유럽뇌성마비감독(Surveillance of Cerebral Palsy in Europe: SCPE)에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뇌성마비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SCPE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뇌성마비인을 등록하는 협력체로서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을 받아 유럽 전역에서 소아과 의사, 소아정신과 의사, 역학자, 치료사 등이 함께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다.

SCPE 네트워크의 목적은 뇌성마비의 발생과 관련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통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뇌성마비의 동향을 모니터링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개발하고, 뇌성 마비 아동에 대한 치료와 돌봄의 기준을 향상하는 데 있다(<http://www.scpenet-work.eu/>).

SCPE(2000)에서는 유럽 8개국의 14개 뇌성마비 센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뇌성마비 관련 조사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의 각 나라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 뇌성마비에 대한 포함 및 제외 기준 등이 다른 경우가 있어 이를 정리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SCPE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로, “일련의 장애들을 통칭한 것이며; 움직임과 자세 및 운동 기능의 장애와 연관되며; 영구적으로 지속하고 변하지 아니하며; 비진행적인 간섭, 손상, 기형에 의하며; 이러한 간섭, 손상, 기형은 발달중이거나 미성숙한 뇌에 의한 것이다.”라고 정하고 있다(SCPE, 2000). 뇌성마비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뇌의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련의 운동장애로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손상을 야기하게 하는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이다.

SCPE에서는 참조 및 훈련 매뉴얼(Reference and Training Manual)을 개발하여 유럽 각국에서의 뇌성마비인에 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http://www.scpenet-work.eu/>). 이 매뉴얼은 뇌성마비 등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입력하게 되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한 것이다. 또한 뇌성마비 아동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들을 훈련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의 질문에 대하여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하면서 결정을 하게 된다.

1998년에 SCPE가 설립된 이후 유럽의 8개국 14개 뇌성마비센터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출현율을 산출하였다(Cans, 2002). 1976년부터 1990년까지의 태어난 아동은 모두 6,502명이었으며, 출현율은 0.208%였다. 각 센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역별 출현율은 차이가 있었으며, 범위는 0.149%에서 0.263%까지였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도의 뇌성마비 아동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출현율이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1983년의 출현율과 거의 유사하게 안정적으로 머물고 있었다.

SCPE 외에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관한 유럽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olk, Parkes와 Hill(2006)의 연구에서는 북아일랜드에서 1981년부터 1997년까지 출생한 415,936명 중 뇌성마비로 등록된 경우는 909명으로 출현율은 0.219%였다. Cansu, Secil과 Tezcan(2006)의 연구에서는 터키의 2세에서 16세까지 아동 41,8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86명이 뇌성마비아동으로 출현율은 0.44%였다. Himmelmann, Beckung, Hagberg와 Uvebrant(2006)에 의하면,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서부 스웨덴에서 탄생한 뇌성마비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출현율은 약 0.2%였다.

Johnson(2002)은 유럽의 11개 뇌성마비 관련 센터에서의 출현율을 종합하여 0.208%로, 95%의 신뢰구간에서 0.202~0.214%로 보고하였다.

호주

호주뇌성마비등록(Australian Cerebral Palsy Register: ACPR)은 전산으로 된 데이터베이스로서 호주 내 7개의 주나 영토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코드 번호에 의하여 저장되는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각 주나 영토들이 협력하여 뇌성마비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다.

ACPR은 뇌성마비의 분포, 빈도, 장애 정도, 뇌성마비의 원인과 결정 인자, 뇌성마비에 대한 예방 전략의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평가할 있도록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이다. 이 ACPR의 정보들은 뇌성마비 발생을 줄이고 뇌성마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ACPR 자료는 ① 뇌성마비에 대한 모니터링, ② 뇌성마비인들의 삶의 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재 방안 마련, ③ 뇌성마비를 예방할 수 있는 인과관계의 발견, ④ 미래의 예방전략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3년 보고서는 1993년부터 2006년까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대한 조사 결과가 수록되어 있다(Cer-

ebral Palsy Alliance Research Institute, 2013). 조사 집단(cohort)은 1993년부터 2006년까지 태어난 아동으로서 아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성마비에 포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5가지에 의한다(Rosenbaum et al., 2007; Rosenbaum, Paneth, Leviton, Goldstein, & Bax, 2006; Mutch, Albeman, Hagberg, Kodama, & Perat, 1992): ① 일련의 그룹을 포괄하는 용어이며, ② 발생 이후 변화하지 않고 영구적인 증상이며, ③ 움직임, 자세, 운동기능의 장애와 관련되며, ④ 비진행적인 방해, 손상, 기형에 원인이 있으며, ⑤ 그러한 방해, 손상, 기형이 뇌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0.21%였다(95% 신뢰수준으로 0.20~0.22%). 뇌성마비인 중 94.4%는 선천적이나 출생 후 28일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출현율은 0.20%로 추정되었다. 나머지 5.6%는 뇌손상 등으로서 출생 후 28일 이후에 인지할 수 있는 사고에 의하여 발생했으며, 뇌손상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다양한 원인의 뇌혈관 손상(34.2%),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26.3%), 사고 등이었다(Cerebral Palsy Alliance Research Institute, 2013).

뇌성마비인 중 중복장애의 비율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뇌전증은 30%, 지적장애 50% 미만, 언어장애 60%, 시각장애 40%, 청각장애 10% 등이다.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맹이 4.8%, 시각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가 36.5%였다. 농은 2.4%, 청각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는 8.1%였다.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는 24.5%, 언어장애가 어느 정도 관련된 경우는 34.6%였다. 뇌전증은 28.9%였으며, 지적장애의 경우 경도 10.8%, 중등도 8.5%, 최중도 12.1%, 장애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25.8%였고,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는 42.8%였다.

미국

미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과 발생율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원이나 협력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연구에 따라 일부 차이가 났다. 이 연구들을 통하여 미국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유형이나 모양의 뇌성마비인이 가장 많은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Yeargin-Allsopp, Murphy, Oakley와 Sikes (1992)은 1985년과 1987년의 연구에서 아틀란티스 5개 카운티에서 10세 아동의 뇌성마비 및 다른 발달장애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89,534명의 아동 중 204명이 뇌성마비인으로 진단되어 출현율은 0.23%였으며 경련성(spastic) 유형의 비율이 61%로 가

장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진단과 관련되는 학교 문서뿐만 아니라 병원 등의 추가 문서 등도 비교 검토되었다. Tanya, Sally, Rachel과 Kim (2006)은 아틀란티스 5개 카운티에서 1996년과 2000년에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8세 아동 중 뇌성마비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동시에 뇌성마비 외에 다른 4개의 발달장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96년 연구에서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 0.36%였고 2000년 연구에서는 출현율이 0.31%였다. 2000년에 비하여 1996년의 출현율이 더 높아 1996년 연구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Yeargin-Allsopp, Van, Doernberg, Benedict, Kirby와 Durkin (2008)은 미국의 앨라배마 주 북부지역, 조지아주 아틀란티스, 위스콘신주 서동부지역의 8세 아동들 중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114,897명이었으며,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은 0.36%였다. 이 연구에서 뇌성마비 관련 자료는 병원에서의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 주에서는 학교 자료도 참고하였다.

2008년 미국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실시된 조사에서는 앨라배마, 조지아, 미주리, 위스콘신의 4개 주에서 8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뇌성마비 출현율은 0.31%였다(Christensen et al., 2014). 이 연구에서 경련성(spastic) 유형의 비율은 77.4%로 가장 높았다. 또한 58.2%는 독립보행이 가능하였으며, 11.3%는 손으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걸었고, 30.6%는 보행이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였다. 뇌성마비 아동의 41%가 뇌전증이 있었으며 6.9%가 자폐증이 동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skoui, Coutinho, Dykeman, Jetté와 Pringsheim (2013)은 1985년 이후에 수행된 뇌성마비 출현율 관련 49개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현율은 0.211%였으며, 95%의 신뢰수준에서 출현율은 0.198%에서 0.225%사이였다. 이러한 미국에서의 출현율 연구는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고 해석되었는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났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2008년부터 Northwestern University, Rehabilitation Institute of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가 연합하여 뇌성마비연구등록(Cerebral Palsy Research Registry, CPRR)을 설립하여 국가 수준에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Hurley et al., 2011).

이상의 유럽, 호주, 미국 등 외국에서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뇌성마비의 출현율을 0.2%로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출현율 연구는 뇌성마비인에 대한 정의, 판정절차, 등록 시스템 개발, 기관간의 연계 등을 통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출현율은 국가의 의료 및 보건 환경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국가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도 약간씩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향후 보다 체계적인 조사

를 통하여 출현율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연구, 시스템 개발, 정책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의 과제

이 연구는 뇌성마비인 출현율에 대한 국내의 연구 실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 향후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 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Ⅱ장에서와 같이, 국내에서 실시된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상황이나, 제Ⅲ장에서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EU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 시스템이 출현율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즉, EU, 호주, 미국 등에서는 공통적으로 뇌성마비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개념정의 및 판정기준과 절차 마련, 등록, 출현율 및 종단적 경향 분석, 서비스 요구 분석과 정책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로 뇌성마비인의 판정기준 개발, 출현율과 특성 조사 실시, 웹 기반 종합적인 시스템 개발의 세 측면을 살펴본다.

뇌성마비인 판정기준 개발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의 여러 나라, 호주, 미국 등과는 달리 국가차원에서 뇌성마비인에 대한 출현율을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공식적으로 출현율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통해서도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을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 뇌성마비는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의 원인의 하나로만 언급되고 있어 뇌성마비인에 대한 별도의 판정기준 제시 및 판정을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뇌성마비인의 출현율, 뇌성마비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과 방향, 교육과 재활을 위한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뇌성마비인에 대한 판정기준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뇌성마비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나 평가 도구 개발은 출현율을 조사하는 기초가 되며, 출현율 조사에 대한 정확성, 체계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의 SCPE에서는 뇌성마비장애 판정에 관한 참조 및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매뉴얼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조작적 정의 및 판정 절차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서도 유럽의 SCPE의 매뉴얼에 근거하여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뇌성마비연맹(Cerebral Palsy Alliance)에서 운영하는 뇌성마비연구소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등록, 예방, 서비스, 정책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https://www.cerebralpalsy.org.au/>). 또한 미국에서도 2006년에 뇌성마비연구등록에 대한 예비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였다(Hurley et al., 2011). 이러한 외국의 연구동향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뇌성마비인의 판정 기준을 연구 개발하여 출현율 조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뇌성마비인 출현율과 특성 조사 실시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실태조사 및 특수교육실태조사를 실시 할 때 뇌성마비는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지 않고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에 포함되는 관계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및 장애 발생원인 등 장애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10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뇌성마비는 뇌병변장애 유형에 포함되어 별도로 출현율, 장애 정도, 특성, 경제 상태, 복지지원 상황, 사회참여 상황, 복지욕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뇌성마비인의 발생, 특성,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가 심층적으로 실시되고 출현율이나 장애특성에 근거한 정책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수교육실태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과 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뇌성마비인은 지체장애 특수교육대상자에 포함되어 별도로 교육적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 교육성과 등이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장애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자료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웹 기반의 뇌성마비인 연구 시스템 개발

뇌성마비인 판정기준 개발이나 뇌성마비인 출현율과 특성조사 실시 등 앞에서 살펴본 과제들은 뇌성마비인 웹 기반 연구 시스템 개발에 통합되어 해결될 수도 있다. 뇌성마비인 출현율 등의 연구 시스템의 사례는 유럽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뇌성마비인의 등록과 관련하여 뇌성마비의 정의, 뇌성마비의 포함 및 제외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변인 설정,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매뉴얼에 대한 연구들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들은 대부분 뇌성마비의 원인을 밝히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출현율 조사 및 뇌성마비장애 정도 경향을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며, 뇌성마비인에 대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며, 지역사회 및 전문가들의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Smith-Sheedy et al., 2009).

이 SCPE, ACPR, CPRR 시스템에서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이나 특성과 관련하여 수집되는 정보들로는 생년월일, 성, 어머니 생년월일, 태아의 수, 임신기간, 출산아 몸무게, 진단/운동 유형, 뇌전증/경련, 대근육운동 기능분류체계(GMFCS), 지적 기능, 출생 후 원인/시기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들이다. 아울러 이들 시스템에서는 뇌성마비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호주의 뇌성마비연맹에서는 뇌성마비에 대한 기본정보, 중재, 치료, 서비스, 자원,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상세하게 포함하고 있어 뇌성마비인 자신, 보호자 및 가족, 연구자, 정책담당자 등이 언제나 지원을 받거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https://www.cerebralpalsy.org.au/>).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뇌성마비인 등록 및 연구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뇌성마비인에 대한 진단 및 평가, 치료나 교육 등 중재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에 기반을 두어 건강, 운동, 인지, 생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계획을 세우며, 생애 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 및 정책 개발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관련 연구 실태를 제시하고,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의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향후 뇌성마비인 출현율 연구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뇌성마비가 법적으로 뇌병변장애 또는 지체장애에 포함되어 장애인실태조사 및 특수교육실태조사 등에서 뇌성마비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거의 확보할 수 없어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뇌성마비인을 위한 서비스 및 정책 개발에도 한계가 크다.

둘째,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는 뇌성마비가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구분되어 판정되고 있으며, 1970년대부터 뇌성마비인의 출현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 결과 뇌성마비인 출현율은 연구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0.2%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뇌성마비인에 대한 등록 시스템 구축, 발생 경향성 분석 및 예방 대책 마련, 서비스 및 정책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뇌성마비에 대한 정의, 판정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출현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유럽의 SCPE, 호주의 ACPR, 미국의 CPRR 등을 참고하여 연구 개발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뇌성마비는 대부분이 선천적 혹은 조기에 발생하여 전 생애에 영향을 미치고, 중도 중복의 장애를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현율 등의 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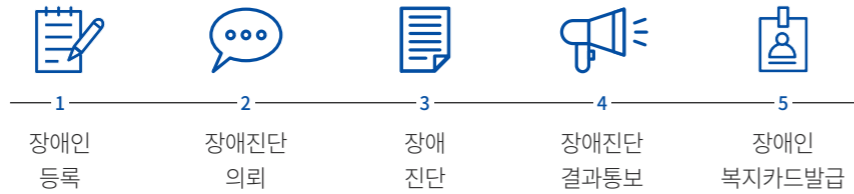


Part 2.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장애등록절차 /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직업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 각종 감면 제도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센터 / 스포츠·문화여가활동

장애등록 절차¹⁾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신청

장애등록을 원하는 대상자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신청

2. 장애진단 의뢰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해당됨.

3. 장애진단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장애진단 및 검사를 받은 후 관계서류(장애진단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

※ 뇌성마비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가능함.

4. 장애진단 결과 통보

제출된 장애진단 관계서류는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송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판정 후, 동주민센터에서 장애등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와 재판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함.

5.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동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후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

장애인증명서 발급

신청절차: 전국 읍·면·동 또는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 발급 가능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무료)

문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이혼, 폭력, 학대)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부 기피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중, 교도소 수감,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인 경우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2) 지원내용

각 가구의 특성이나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함.

2017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49만 5,879	84만 4,335	109만 2,274	134만 214	158만 8,154	183만 6,093	208만 4,03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66만 1,172	112만 5,780	145만 6,366	178만 6,952	211만 7,538	244만 8,124	277만 8,71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71만 760	121만 213	156만 5,593	192만 973	227만 6,353	263만 1,733	298만 7,11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82만 6,465	140만 7,225	182만 457	223만 3,690	264만 6,923	306만 155	347만 3,388

생계급여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예시)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4만 214원에서 60만원을 뺀 74만 220원 지급 (원단위 올림)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보건복지부 사이트 '장애인' 분야 장애인정책 자료 / 강서구청 사이트 '장애인' 분야 장애인등록 자료 참조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경보수) 350만원 / 3년, (중보수) 650만원 / 5년, (대보수) 950만원 / 7년

또한 자가가구 수급자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단차제거, 문폭 확대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해주며, 고령자(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해줌.

교육급여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200원	-	-	-
중학생	41,200원	54,100원	-	-
고등학생	41,200원	54,100원	해당학년의 정규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체
지급횟수	연 1회	연 2회(분할지급)	연 1회	입학금: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지급

3)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 생계·의료·교육급여 : 보건복지콜센터(☎129)
- 주거급여 : 콜센터(☎1600-0777) / 마이홈(☎1600-1004, www.myhome.go.kr)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 기간이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인 가구

※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661,172원	1,125,780원	1,456,366원	1,786,952원	2,117,538원	2,448,124원

※ 보장기관 확인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재산기준 : 가구당 1억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2) 지원내용

생계급여(소득대비 차등급여 지원)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최대 6개월)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서울시 다산콜(☎120)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지원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세대에 포함하여 소득 인정액 산정

· 부양의무자(부양요건) 기준 :

- ①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②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③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2)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음.
 - ① 회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②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③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1)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000원)이하인 경우
- ※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로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등급을 합산하여 3급으로 상향 조정되는 분들은 제외

2) 지원내용

- 만 18세~만 64세까지 매월 최고 206,050원(2017년 4월~2018년 3월)의 기초급여를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 20%를 감액하여 1인당 164,840원을 지급(2017년 4월~2018년 3월)
-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
- 65세 이상은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별도 신청 필요),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이며, 구체적인 급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65세 미만 일반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80,000원
 - 65세 이상 일반재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86,050원
 - 65세 이상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 70,0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이고 종전 장애수당(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로서 보장시설 수급자

장애수당



- 65세 미만 일반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70,000원
- 65세 이상 일반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70,000원
- 65세 이상 급여특례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40,000원
- ※ 차상위 급여특례 :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 자 (65세 연령이 되는자 포함)
- 65세 미만 차상위 초과(일반) : 20,000원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일반) : 40,000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생활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1)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경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8세 이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제외
- 경증장애 : 3~6급(3급 중복장애는 장애인연금 대상)

2)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인당 월 4만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월 2만원 지급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장애 아동수당



장애아동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드리기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1~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일이 속한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중인 자는 포함

2) 지원내용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급여 지급

구분	중증장애아동수당	경증장애아동수당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만원	월 10만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7만원	월 2만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 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위기사유 :

- ①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④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⑤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재산 :

- ①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
- ② 재산 : 대도시 1억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③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15만7천원(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지원	63만6천원 이내(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3만4천원 이내(4인 기준)	최대 6회
교육지원	초등학생 21만9천원, 중학생 34만8천원, 고등학생 42만7천원 및 수업료 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가구는 최대4회)
연료비지원	9만5천원(10월~3월/월)	최대 6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지원	50만원 이내	1회
단체 등 연계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담 등 기타 지원	제한 없음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자립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고, 내일키움통장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의 성실한 근로자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희망키움통장 I

1)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4인 기준 107만 2,171원)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 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3만원 지원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 + 이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희망키움통장 II

1) 지원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2)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1) 지원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참여자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2)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이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일 경우, 정부 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1:0.3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을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1) 지원대상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인 자(다만,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소득이 일정금액(지원내용 총소득 기준금액 참고)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2,5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230만원을 지급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1,300만원	2,100만원	2,50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77만원	185만원	230만원

3) 신청 및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만,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
- **소득요건**: 전년도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재산 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지원내용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총소득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을 지급

3) 신청 및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 www.hometax.go.kr)

소득(경제적) 보장 서비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3,690원) 초과 100%(4인 기준 446만7,380원) 이하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자립자금을 최대 3%의 저금리로 대출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대출조건	상환방법
무보증대출	1천2백만원 이내	모보증대출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보증대출	2천만원 이내	보증인 요건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800만원 이상	
담보대출	5천만원 이내	-	

※ 대여목적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지원 가능)
- 출퇴근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 기타 지자체장이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장애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구분	대출한도(가구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5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10만원 초과 검사비용 일부 지급(최대 10만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일부지급(최대 10만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1)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장애인 및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국가유공자 중 보호대상대상자

2) 지원내용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며, 장애등급심사결과 장애등급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기타 일반장애 1만5천원

※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장애등록진단비 및 검사비는 중복지원 불가능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장애인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의료급여2종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대상 아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3만3,690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아동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

2) 지원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는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미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1)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지원내용	상세내용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등록장애인 소유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 시 특례적용	건강보험료 책정 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등록장애인에 대해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3)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장애인 보장구 급여



1) 지원대상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고시액,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

※ 지원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목발,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등

3) 신청 및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1~6급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00만원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은 달리하므로 중복 지원 가능함.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2) 지원내용

장애아동의 의료비(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소요 비용)를 연간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1) 지원대상

지속적인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사회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맞춤형 재활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대여, 자가관리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1)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2) 지원내용

-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 16주부터 5개월 분의 철분제를 지원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 까지 엽산제를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1)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자

2) 지원내용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는 경우 최대 50만원(다태아인 경우 90만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를 통해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행복카드

1) 지원대상

임신후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배우자, 부모·조부모(배우자의 부모·조부모 포함), 자녀·손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

2) 지원내용

-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진료 후 지정요양기관(산부인과 및 한방 병 의원, 조산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지원

※ 카드수령(포인트생성일)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

· 임신 1회당 5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90만원)

· 분만 취약지(34곳) 지원기준 충족자의 경우, 기본 지원 금액 이외 20만원 추가 지원

3) 신청 및 문의

· BC카드(☎1988-4651) / 삼성카드(☎1566-3336) / 롯데카드(☎1899-4282)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129)

출산비용 지원



1) 지원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대상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의료 및 재활지원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4인 기준 직장 110,177원 / 지역 122,696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2)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단 5일~최장 25일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804만원) 이하 가구의 임산부
 - 질환기준: 임신 20주 이후에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2) 지원내용

3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2) 지원내용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수술 및 치료비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양플러스



1) 지원대상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57만4천원) 미만인 가구의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출산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굴·오렌지주스 등의 영양보충식품을 제공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인 경우에는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함.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 지원하는 내용 등의 교육과 상담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영유아 건강검진



1) 지원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

2) 지원내용

건강검진(7회), 구강검진(3회) 비용 전액을 지급

구분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3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건강검진	○	○	○	○	○	○	○
구강검진	-	-	○	-	○	○	-

※ 저소득층(건보료 하위 30%)에게는 영유아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돌연사중후군, 청각 시각이상, 치아우식증 등

3) 신청 및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사이트(<http://hi.nhis.or.kr>)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
- ※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3만 8,000원 지원
- 만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43만 8,000원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 한도액을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방과후 보육료 지원



1)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2) 지원내용

-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 지원
- ※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 불가
-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1만 9,000원 지원(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 ※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 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 방학기간 중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발달 재활서비스



1) 지원대상

-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50%(4인 기준 796만 8천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 ※ 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장애등록 없이 지원 가능

2) 지원내용

- 매 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언어·청능 / 미술·음악 / 행동·놀이·심리 / 감각·운동 중 선택하여 이용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언어발달 지원



1) 지원대상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 120%(4인 가족 637만 4,400원) 이하인 가구의 12세 미만 비장애자녀

2) 지원내용

- 매 월 16~22만원의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 논술 및 학습지도는 불가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아이돌봄 서비스



1) 지원대상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 ~ 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2) 지원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원함.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 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 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교)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유형	소득기준	시간제(시간당 6,500원)				영아종일제 (월 130만원) 0~2세	
		A형		B형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4인기준 268만원)	4,875원	1,625원	4,225원	2,275원	91만원	39만원
나형	기준 중위소득 60~85% 이하 (4인기준 379만7천원)	2,925원	3,575원	-	6,500원	65만원	65만원
다형	기준 중위소득 85~120% 이하 (4인기준 536만1천원)	1,625원	4,875원	-	6,500원	39만원	91만원
라형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6,500원	-	6,500원	-	130만원

※ A형: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B형: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3) 신청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 ☎1577-2514

장애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0~5세 장애아동

2) 지원내용

- 0~36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2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 36~84개월 미만의 아동은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2만 3,038원)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가족)

2)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 양육비: 만 13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12만원 지급,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추가 지급
- 학용품비: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연 5만4,100원 지급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4인 기준 232만원 3,038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2) 지원내용

고교생 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교육부(☎1544-9654)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1) 지원대상

서울시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두고, 전국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인 여성장애인

2)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산전산후관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등을 지원

구분	일 최대 파견시간	월 최대 파견시간
출산예정일 2달 전	4시간	30시간
100일 이내 신생아 양육	6시간	120시간
만 9세 미만 아동 양육	4시간	70시간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4인 기준 178만원) 이하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입소 영아, 한부모(부자 조손) 가정 영아에게 지원

2) 지원내용

기저귀(월 6만 4천원) 및 조제분유(월 8만 6천원) 구매 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소 / 보건복지콜센터(☎129)

급식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

2) 지원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 (무상급식 지역 제외)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교육부(☎1544-9654)

고등학교 학비 지원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의 범위가 상이

2)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교육부(☎1544-9654)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1)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 1~3급인 학생

※ 지원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2) 지원내용

장애대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교육활동을 보조하는 학습도우미를 지원

※ 대학에서 도우미를 선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3) 신청 및 문의

·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 교육부(☎044-203-6954)

아동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1) 지원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 우선)

2) 지원내용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 제공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1)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내용

치료지원 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

3) 신청 및 문의

교육부(☎044-203-6562)

장애인 정보화 교육



1) 지원대상

- 전문교육 : 모든 등록 장애인
- 방문교육, IT긴급지원서비스 : 1~2급 중증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월 최대 파견시간
전문교육	전국 147개 장애인 정보화교육기관에서 컴퓨터 기초, 인터넷, 한글 등 OA, 홈페이지 제작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교재, 교육비 전액 무료)
방문교육	방문 정보화강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일 3시간 씩 주 3회(총 20회) 정보화교육을 실시(교재 일부, 교육비 전액 무료)
IT긴급지원 서비스	컴퓨터 수리, 정보통신기기 활용법 등 정보화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전화상담 및 방문 서비스를 지원(1인 월 최대 2회, 연 6회 서비스 제한)

3) 신청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1) 지원대상

- 입양 당시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이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인 경우에 해당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인 경우에 해당
-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하고, 만 18세까지 지원(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때까지 지원

2) 지원내용

- 중증장애 입양아동 : 월 62만 7,000원 지원
- 경증장애 입양아동 : 월 55만 1,000원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서울시한부모 가족지원센터



1) 지원대상

18세(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는 한부모인 부 또는 모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로 인한 가족(미혼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2)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주거지원, 학습지원, 역량강화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3) 신청 및 문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02-861-3020)



홈페이지 (<http://www.seoulhanbumo.or.kr>)

직업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자활근로



1) 지원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지원내용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

※ 자활근로사업단이란,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단 등과 같이 기술습득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한 사업단으로 전국 248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일자리지원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2)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근로시간	급여(월)
일반형 일자리		시·군·구,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일 8시간 주 5일	135만 3천원
사간제 일자리	미취업 등록 장애인	행정보조 업무를 하는 전일제 일자리 지원	일 4시간 주 5일	67만 6천원
복지 일자리		도서관, 우체국, 학교, 복지관 등에서 공공형 (사서보조, 우편물분류, 주차단속, 환경도우미, 급식도우미 등) 일자리 지원	주 14시간 월 56시간	36만 3천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운영



1)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 69세 이하 장애인으로서 취업성공 패키지 1단계 이수 및 소정의 입학절차를 통과한 자

2) 지원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전용 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구분	내용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 지급(입학 시 1회 한하여 지급)
훈련참여수당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에게 월 28만4천원 지급 ※ 맞춤훈련생은 월 20만원 지급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월 7만원 지급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을 받는 사람 중 부양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명까지 1명 당 3만원 지급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에게 월 5만원 지급
식비	통학생 중 개인적 사정(식이조절 등으로 인한 개별 도시락 지참)에 의해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식사 대신 식비지급을 희망할 경우 6만 6천원 지급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1) 지원대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을 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지원고용 현장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

2) 지원내용

- 훈련기간(3~7주) 동안 사업체에서 직무습득 및 사업체 적응을 돕기 위한 직무지 도원을 배치하여 현장훈련을 거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 훈련준비금 4만원 및 훈련수당 1일 1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재해보험가입을 지원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직업교육 및 일자리 서비스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지원



1) 지원대상

15세 이상의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구직 장애인

2) 지원내용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중증 및 여성 장애인과 고령의 장애인이 훈련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거주지 인근의 훈련기관을 이용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
- 지원유형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이 있음.

※ 민간위탁훈련기관 훈련생은 교통비와 식비를 포함하여 월 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연계 조건)하고 있음.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1) 지원대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미취업 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

구분	내용	내용	내용
직업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환경적응 및 직업능력향상 훈련 실시	직업재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직업재활시설	월 7만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취업과 연계가 가능한 기술 훈련 실시 (안마수련, 바리스타, 정보처리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기관	월 20만원 (훈련준비금 4만원, 1회)

3) 신청 및 문의

-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홈페이지(www.vr.koddi.or.kr)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일반 직장에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취업 등을 지원

3) 신청 및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근로지원인 지원



1) 지원대상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 지원내용

-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장애인근로자 직무평가를 통해 결정)
-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근로자의 부수적인 업무 등을 지원

※ 장애인근로자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시간당 300원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주거지원서비스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 공급



1)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인 등록장애인

※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2) 지원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을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며,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LH공사(☎1600-1004)

임대주택 지원



영구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23.1~39.6㎡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3) 신청 및 문의

· 영구임대단지가 속해 있는 주민센터

·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국민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36.3~59.4㎡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3) 신청 및 문의

· 사업주체(LH, SH등)의 홈페이지

·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1) 지원대상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37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80~100% 수준으로 5년 또는 10년 간 임대 후 분양전환

3) 신청 및 문의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홈페이지

·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기존주택 매입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20년 간 저렴하게 임대

※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50㎡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 보증금은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기존주택 전세임대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 기준 27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2) 지원내용

-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수도권 최대 8,500만원, 광역시 최대 6,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5,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을 월임대료로 납부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주거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인 사람

2) 지원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2) 지원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경우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청 / LH공사(☎1600-1004)

저소득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등급이 1~4급인 장애인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
- 주택소유주가 허락한 임대주택(자가주택 포함)

2) 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유형, 행동패턴 등을 고려해 중증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의 집수리를 지원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매년 초 - 약 2월 경 신청)

에너지바우처



1)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가구 중 장애인, 노인, 영유아,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장애인: 1~6급 등록장애인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2)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 실물카드: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 가상카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 이용액을 자동 차감

가구당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	8만3천원	10만4천원	11만6천원

3) 신청 및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개선사업



1) 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가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지원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을 지원

※ 폼알데하이드,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유발인자의 농도를 측정 점검하여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에 대하여 친환경 경벽지 장판 교체 등 실내환경을 개선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신청 및 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380-0306)

주거지원서비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2) 지원내용

- 노후 주택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함으로써 에너지구입 비용을 절감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 기름보일러 교체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한국에너지재단(☎02-6913-2121)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1) 지원대상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2) 지원내용

- 각종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분양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특별공급함.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임대보증금을 국비지원하여 저렴한 월세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10개 시·도 운영 중)

3) 신청 및 문의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공사(☎1600-1004)
- 공동생활가정형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주거복지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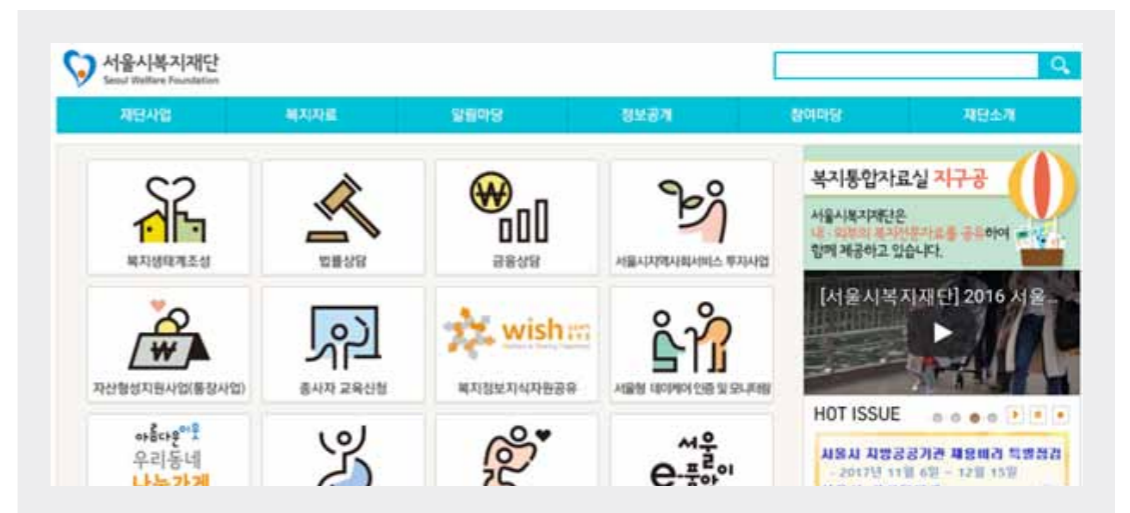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시에서는 보증금, 월세, 연료비 등 주거비 체납 등으로 강제퇴거위기에 몰린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 문제 관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서울 주거복지지원센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상담지역
성동 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성동구 행당로75, 목련상가 지하1F	02-2281-0464	성동·동대문·광진
성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72, 5층	02-922-5942	성북·종로·중구
강북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35길 34	02-980-4808	강북·도봉
노원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37다길 24	02-930-1180	노원·중랑
은평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21길 52, 1층	02-388-2979	은평·마포
서대문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서대문구 거북로골4-18(홍은동)	02-303-3733	서대문·용산
금천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7, 20층 2002호	02-2627-8499	금천·구로
영등포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이름 502호	02-785-7044	영등포·양천·강서
관악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관악구 중앙2길 16, 2층	02-875-3197	관악·동작·서초
송파주거복지지원센터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216, 2층	02-400-2271	송파·강남·강동

※ 홈페이지 (<http://www.welfare.seoul.kr>)



주거지원서비스

LH주거복지센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분양 임대주택, 토지, 상가,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하자 접수 및 상담, 주거급여 등 모든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마이홈 센터

지역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권	서울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02-3416-3604
강남권	서울 강남구 선릉로514 성원타워 1층	02-2182-2733
강북권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112-7 인의빌딩 10층	02-766-9058
강서권	서울 영등포구 양산로107 인국빌딩 1층	02-2169-8801~3

※ 마이홈 센터는 위 4개소를 포함하여 전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음.

문의

LH공사(☎1600-1004)

주거복지 지원센터



SH주거복지센터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상담 및 교육, 주거상향 설계 서비스, 주거관련 정책 및 제도 안내, 공구대여(동대문주거복지센터 제외), 주거비 지원(성동주거복지센터 해당), 간편집수리(센터별 상이), 주거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SH주거복지센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상담지역
강남주거복지센터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9길 1-3 선포레 1층	02-6202-9000~9	강남·강동·관악 금천·동작·서초·송파
강서주거복지센터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1로 72, 마곡엠벨리 10단지 엠타워 2층	02-2657-8135-9	강서·구로 양천·영등포
성동주거복지센터	서울 중구 다산로210 흥진빌딩 8층	02-6909-9390-4	마포·서대문·성동 용산·은평·종로·중구
동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16길 33 신내의료안심주택 상가 103호	02-3421-8960-2	강북·광진·노원·도봉 동대문·성북·종로

문의

SH공사(☎1600-3456)

홈페이지 (<http://www.i-sh.co.kr>)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일상생활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1) 지원대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 이상~65세 미만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 결과 220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가원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를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이하 65세 도래자라 칭함)도 지원

※ 인정점수가 220점 미만이라도 추가급여 사유가 있고, 20점 이내 조정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선정

2) 지원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구분	기본급여	내용
1등급	109만 1천원 (약 118시간)	
2등급	87만 4천원 (약 95시간)	독거, 취업, 취학여부, 출산여부 등 생활환경에 따라 9만 3천원 ~ 252만 3천원 추가 지급
3등급	65만 9천원 (약 71시간)	
4등급	44만 1천원 (약 48시간)	

3)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콜센터(☎129)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서비스



1)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점수가 400점 이상이며,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2) 지원내용

순회돌보미(활동보조인 자격을 갖춘 순회인력)가 22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중증장애인 가구를 2~3회 방문하여 위생관리, 건강상태 체크, 체위변경,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1~3급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족(법정보호세대) 등

※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

2) 지원내용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

※ 자격 격정일로부터 1년 지원(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장애인 콜택시



1) 지원대상

-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기타 휠체어를 이용하는 1~2급 중증장애인

※ 외국인은 휠체어 이용 탑승 시 가능

2) 운행시간(24시간 체계)

주간 07:00 ~ 22:00(15시간) / 야간 22:00 ~ 익일 07:00(9시간)

3) 운행지역

서울시계 운행 원칙 (단, 서울시 인접지역 운행가능)

※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는 서울시내여야 이용이 가능(서울이외 출발지 배차 불가)

4) 이용요금

- 기본요금 : 5km까지 1,500원(일반택시 2Km까지 2,400원)

- 추가요금 : 5km부터 10km까지 km당 300원, 10km이상 km당 35원

※ 톨게이트 비용 이용자 부담

5) 신청 및 문의

- 인터넷콜센터(<http://calltaxi.sisul.or.kr>)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1588-4388)

일상생활서비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1) 지원대상

서울에 거주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보호자

2) 운행시간

평일 7시 30분~19시 00분 / 토요일 7시 30분~16시 00분(노선별로 다름)

※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음.

3) 신청 및 문의

-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4)
- 해당 자치구 사회복지과

양곡할인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정부양곡을 50~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보건복지콜센터(☎129)

무료법률 구조제도



1)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558만 4,225원)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2) 지원내용

- 1~3급 중증장애인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
- 4급 이하 등록장애인 : 변호사 비용을 지원(인지대 등 소송비용은 본인부담)

3) 신청 및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사랑의그린 PC 지원



1) 지원대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등

※ 보급 후 1년 미만자 재보급 불가

2) 지원내용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중고 컴퓨터를 정비하여 무료로 제공

※ 보급받은 후 1년 동안 무상 A/S 제공

3) 신청 및 문의

- 사랑의그린PC 상담전화(☎1588-2670)
- 사랑의그린PC 홈페이지(<http://lovepc.nia.or.kr>)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

※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의 경우 90% 지원

- 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음.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보급품목은 www.at4u.or.kr에서 확인 가능

3) 신청 및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화도우미(☎1588-2670)

일상생활서비스

장애인 가족지원 센터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2) 지원내용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및 정보제공, 긴급돌봄, 문화여가 등을 지원 하고 있음.

3) 신청 및 문의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SAFF타워 가락물 업무동 1103호	02-6949-3133~4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강서구 발산로 40, 관리동 4층 7호	02-6956-1991~2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46, 301호(자양동)	02-456-0708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802호(답십리동, 클래식타워)	02-2249-1717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8, 202호 (성산동, 삼라마이더스오피스텔)	02-303-3618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은평구 은평로 147 미주빌딩 403호	02-357-3345~6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1)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 중인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인권침해 및 차별 관련 상담, 법률자문 및 소송지원, 장애인식개선 등

3) 신청 및 문의

서울시장장애인인권센터(☎1644-0420)



홈페이지 (<http://www.i-sh.co.kr>)




각종 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대상	지원내용	문의
방송요금	시·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TV 수신료 전액 면제	☎1588-1801
통신요금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 시내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시외전화 통화료 월 3만원 한도 50% 감면 · 인터넷전화 통화료 월 50% 감면 ·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이용료 월 30% 감면	통신사 대리점 또는 민원24홈페이지 신청 / 미래창조과학부 ☎1335
교통비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 철도요금 감면 · 지하철 전철 무료 이용 · 공영버스 무료 이용 · 항공요금 감면 대한항공(1~4급 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 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감면	코레일 ☎1544-7788 대한항공 ☎1588-2001
자가용 자동차 관련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감면 4~6급 장애인 20% 감면	한국해운조합 ☎02-6096-2000
자가용 자동차 관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중증장애인(1~3급) 50% 감면, 경증장애인(4~6급) 30% 감면	교통안전공단 ☎1577-0990
자가용 자동차 관련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감면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시·군·구 교통담당과
각종공공요금	1~3급 장애인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지자체별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환경부 ☎1577-8866
문화활동비	등록장애인	· 전기요금 감면 (여름철 월 2만원, 기타계절 월 1만 6천원 한도)	한국전력 ☎123
과태료	1~3급 장애인	· 고공, 능원,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 국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공공체육시설 이용 요금 50% 감면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기타	등록장애인	· 질서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 공항 터미널 주차료 감면	사이버경찰청 ☎182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부서 코레일 ☎1544-7788

보조기기 및 보조기기센터

보조기기

영역	사진	설명	제품
일상생활 보조기기		· 장애인이 식사, 용변, 목욕, 의복착용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보호자가 보조할 수 있도록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목욕의자, 이동용 변기, 식사보조도구, IoT기기 등
컴퓨터 접근 보조기기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반적인 컴퓨터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미세한 신체부위를 활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빅키보드, 조우스, 클러조이스틱 등
자세 보조기기		· 올바른 자세유지가 어려운 장애인에게 각 종 벨트 및 서포트 장치를 통해 앉기, 서기, 눕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이너, 기립훈련기, 피더시트 등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 장애인의 직업,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작업테이블, 필기보조도구, 페이지터너 등
보완대체 의사소통 보조기기(AAC)		·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기	gotalk, 이지컴, 키즈보이스, 태블릿PC 등

영역	사진	설명	제품
감각 보조기기		· 시·청각 장애인이 컴퓨터, 독서 및 일상생활에서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독서확대기, 한소네, 센스리더, 음성증폭기 등
이동 보조기기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휠체어, 워커, 전동스쿠터 등
여가 보조기기		· 장애인의 여가, 레포츠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특수자전거, 스포츠용 휠체어, 카드혼합기 등

보조기기센터

센터명	전화번호	센터명	전화번호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충청북도보조기기센터	043-265-0401
경기도북부보조기기센터	031-852-7363	경상남도보조기기센터	055-270-7576-8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032-540-8989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064-753-9997
대전광역시보조기기센터	042-388-2981~2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02-440-5891~5
대구광역시보조기기센터	053-650-8340~1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02-2662-3495
부산광역시보조기기센터	051-790-6192~5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070-4347-9023~5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062-613-9365~6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031-295-7363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	063-220-3000	노들담복지관자세유지기구센터	032-540-8988

스포츠·문화여가활동

스포츠 활동

장애인 체육종목



양궁,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사이클, 축구, 사격, 수영, 골볼, 유도, 론볼, 역도, 탁구, 좌식배구, 농구, 휠체어 펜싱, 휠체어테니스, 볼링, 휠체어러닝, 조정, 크로스 컨트리, 아이스슬레이지하키, 알파인스키, 휠체어컬링, 빙상, 럭비, 요트, 태권도, 승마, 골프, 당구 등

장애인 체육 정보안내 :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00, <http://www.koreanpc.kr>)

주요 스포츠 종목



1) 보치아

그리스의 공던지기 경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987년 제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처음 경기가 치러졌으며, 한국뇌성마비복지회의 주최로 제1회 전국뇌성마비인 보치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음. 개인 경기와 2인조 경기는 4엔드, 단체전은 6엔드로 이루어지며 개인 경기 선수는 3번과 4번 던지기 구역에서 경기하고 단체 경기는 1, 3, 5번(홈 사이드), 2, 4, 6번(어웨이 사이드)까지 던지기 구역을 사용하여 경기함. 선수들은 공을 경기장 안으로 던지거나 굴리거나 발로 차서 보냄. 6개의 빨간색 공과 6개의 파란색공을 가지고 각 선수가 매 회마다 표적구에 가장 가까이 던진 공에 대하여 1점을 부가하며 6회를 한 다음 점수를 합산하여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함.

문의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02-930-8180, <http://k-boccia.kosad.kr>)

2) 7인제 축구

국제축구연맹(FIFA)의 규정을 적용하고 11인제 지적장애 축구부문, 11인제 청각장애, 7인제 뇌성마비, 5인제 시각장애축구 부문으로 실시. 전 후반 각 30분, 휴식시간은 15분이며, 한 팀은 7인으로 구성되고, 선수는 C5, C6, C7, C8 등급 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음. 각 팀 중 적어도 한명은 C5 또는 C6 등급의 선수가 경기에 임하고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참가선수의 수는 6명으로 제한됨. 경기 중 C8등급 선수는 최대 2명임.

문의 : 대한장애인축구협회(☎02-735-5851~3, <http://kofad.kosad.kr>)

3) 파크골프

파크골프의 어원은 Park(공원) + Golf(골프) = Park Golf(커뮤니케이션스포츠)의 의미임. 즉, 공원 개념에 골프의 게임요소를 합쳐, 적은 부지에서 '장애인과 어린아이부터 노인, 3세대 가족, 연인, 직장인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재편성한 커뮤니케이션 스포츠임. 티그라운드에서 각 홀까지를 1홀이라 하고 9홀이 하프, 18홀이 1라운드가 됨. 1홀의 거리는 20~100m 이고, 파는 3~5타로 설정되어짐. 코스에는 Fairway, bunker, 러프, 그리고 플레이를 금지하는 OB지역이 있음. 룰을 위반한 경우 2타를 더 가산하는 패널티가 부여되며, 모두 2타 벌칙이 있음. 1라운드는 18홀로 스트로크 플레이와 매치 플레이가 일반적임. 4인 1조로 진행되며, 18홀 기준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소요됨.

문의 : 대한장애인골프협회(☎070-8942-0918, <http://www.dpga.org>)

스포츠 강좌이용권



1)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5세~18세 유·청소년)

2) 지원내용

1인당 매 월 8만원 이내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수강 가능한 시설은 홈페이지(www.svoucher.or.kr)-이용가능 스포츠시설에서 확인

3) 신청 및 문의

- 시·군·구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스포츠·문화여가활동

관광지 안내



장애인 여행 관련 여행사

구분	사이트	소재지	연락처
유니버설디자인투어	www.universaldesignstour.com	서울 종로구	02-736-7047
나눔여행사	http://www.nanumtour.kr/	서울 종로구	02-599-5411
곰두리여행	www.gomduritour.com	서울 마포구	02-6383-1000
두리함께 (제주도)	http://www.jejudoori.com	제주시	064-742-0078
문화관광복지단 (부산)	http://www.munhwanurishop.kr	부산 연제구	051-951-8090

장애인 여행 정보 사이트

구분	사이트
한국관광공사	http://korean.visitkorea.or.kr
서울시 장애인 관광편의정보	http://disability.seoul.go.kr
경주장애인관광 도우미센터	http://www.jangtour.org / ☎054-745-2255
휠체어로 즐기는 대구관광	http://www.wheeltour.or.kr / ☎053-633-8001, 053-621-6160

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1) 지원대상

- 신체활동이 가능한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 만 65세 이상 노인

2) 지원내용

- 장애·노인질환 등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광 상품을 구성하고, 관광일정에 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공
-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이 동반하는 여행서비스 제공
- 서비스 횟수 : 평생 1회 (1박 2일)
- ※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3) 신청 및 문의

주민센터

※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자치구별 시행 여부 확인 필요

통합문화이용권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 지원내용

-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및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1인 1매, 연간 6만원)를 발급
- 문화예술: 영화, 도서, 음반, 공연, 전시, 주민센터 문화강좌 등
- 국내여행: 숙박업소, 교통, 여행사, 놀이공원, 스키장, 온천 등
- 체육분야: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및 국제스포츠경기대회 관람권, 운동용품 등
-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장 결제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마켓 이용

3) 신청 및 문의

-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 www.munhwanuricard.kr)
-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 카드 사용 관련 일반 문의)
- NH농협카드 콜센터(☎1644-4000, 수령등록 및 분실신고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1)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2) 지원내용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원)을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수목원 등)에서 사용 가능

3) 신청 및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
-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042, 4026)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지원 공모사업 진행
 ※ 주관단체: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체부
 ※ 공모기간: 1월~2월 / 사업기간: 3월~12월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02-760-9700)



Part 3.

복지시설 / 재활병원 / 교육기관 안내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 자립생활센터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장애인단기보호시설 / 장애인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자립생활주택 / 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

재활병원

재활병원 / 장애인치과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전담 어린이집 / 특수학교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 안내지역 : 서울(단, 장애인거주시설만 경기지역 포함)

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2)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복지관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강남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05(개포동12-10)	02-445-8006	종합
하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13(개포동 12-5)	02-451-6000	종합
성모자애복지관	서울시 강남구 헌릉로 757길 35(울현동 100)	02-3411-9581	종합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01(고덕동 317-24)	02-440-5700	종합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강북구 오현로 189 (번2동306-12)	02-989-4215	종합
강서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5길 69 (방화동452-5)	02-932-4292	뇌병변
기쁜우리복지관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65 (가양동1466번지)	02-3665-3831	종합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	02-877-0750	종합
정립회관	서울시 광진구 워커히로 93 (구의동16-3)	02-446-1237	지체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 (개봉1동50-8)	02-2611-1711	종합
성프란치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라길 25-10 (가리봉동131-2)	02-830-6500	종합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101길 17 (독산1동1011-1)	02-6912-8000	종합
성민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상계동321-9)	02-931-7970-2	종합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73 (상계동771)	02-935-6375	지체
서울시립복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2 (상계동771)	02-951-9876	종합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상계6.7동771)	02-932-4412	뇌병변
동문장애인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뫼로7길 5 (휘경동49-39)	02-2244-3100	종합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02-927-0063	종합
서울시립남부 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신대방동395)	02-829-7100	종합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3 (성산2동595-1)	02-306-6212	종합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북아현동129-37)	02-3140-3000	종합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380(남부순환로 340길 15)	02-2055-0909	종합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마장동527-2)	02-2290-3100	종합
성북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0 (하월곡동11-11)	02-915-9200	종합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61길 26 (마천1동211-90호)	02-431-8881	종합
송파구방이복지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11길 68 (방이동52-2)	02-3432-0477	지체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9 (신정동319-13)	02-2061-2501	종합
서울시립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2가94-379)	02-3667-0870-5	종합
용산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93길 49 (효창동3-268)	02-707-1970	종합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구산동191-1)	02-351-3982	종합
종로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종로구 지하문로 89 세종마을 푸르메센터 3층	02-6395-7070	종합
중구장애인복지관	서울시 중구 퇴계로 460(신당동)	02-2235-1328	종합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신내동572-2)	02-438-2691	종합

자립생활센터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권익옹호, 정보제공,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동지원서비스, 탈시설 자립지원

3) 신청 및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내 회원기관 참조(<http://www.koil.kr>)

복지시설

자립생활센터

자립준비에 도움을 주는 센터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Good Job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7-61강남문화원2층	02-518-2197
햇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24, 303호(명일동, 명일메가타운)	02-442-9664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북구 신수봉로 291	02-980-5264
아름다운행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66 우리벤처타운	02-2605-0420
남은자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공향대로41길 51 세신그린코아 901	02-3664-0874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567-4 삼정코아상가B01호	02-2064-0896
강서길라잡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24번지한화비즈메트로2차502호	02-3662-0946
강서다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5단지 A상가동 지하1층 4.5.6호	070-4200-2136
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31다길 11 윤탁아트리움아파트 1층	02-2691-2692
관악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877-0293
광진으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강변테크노마트 1808호	02-444-4399
광진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 58 2층	02-6348-8915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03-108명인빌딩4층	02-2612-3391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5-1(구로중앙로18길60)	02-857-9501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291-5시티렉스5층에프510호	070-4035-4340~1
노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어울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305번지동양메이저상가B16-7호	02-930-8212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33-25 북부법조타운 302호	02-455-2887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클래식타워606호	02-959-5603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72-4번지2층	02-812-2536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592-6번지 이안상암 2차상가 206호	02-337-6150
서대문햇살아래장애인자립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28-6	02-720-6698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8-1바우외복지문화회관401호	02-575-7616
성동느티나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33 9층, 909호	070-8834-0551
성북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34길 15-10	02-717-6150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293-1세신훼밀리타운305호	02-404-0920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양천구 지양로길 5	02-2608-2979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4(한국스카우트연맹) 302호	02-786-8482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80-2풍양빌딩1층	02-716-0302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40-9 갤럭시티타운 301호	070-8750-1724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2태화빌딩3층	02-2252-9050
신세계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153 (대명플라자 503호)	02-2207-107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을 낮 시간 동안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견학·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령	구분
햇별교실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로 21길 4	02-2661-0670	성인	지적·뇌병변
강서뇌성마비 주간보호센터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2층 (방화동 452-5)	02-2662-3491	성인	뇌병변
오뚜기뇌성마비 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 96	02-932-4412	성인	뇌병변
지앤지 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도봉구 삼양로 577-44, 2층 (쌍문동)	02-998-2855	청소년·성인	뇌병변
마포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성산월드타운대림 아파트 102동 102호	02-302-1066	청소년·성인	지체·지적·뇌병변
우리마포장애인 주간이용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노고산동)	02-359-1000	성인	지적·뇌병변
서리풀 주간보호센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15(서초동)	02-2055-0909	성인	뇌병변
성동장애인 주간보호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02-2290-3141	아동	지적·뇌병변
한벗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02-713-5050	청소년·성인	뇌병변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 사이트(<http://disability.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 참조

*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재활치료 및 교육, 여행·건강·취미생활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연령	구분
강서희망의집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34길 36	02-2605-7980	성인	뇌병변
선린원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5-5	02-2654-3372	아동·성인	뇌병변·중증 장애인
동천단기 보호센터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18길 41	02-976-0563	성인	서울거주등록 장애인
사랑샘 단기보호시설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63	02-932-4635	아동·청소년	등록장애인
한빛동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2길 98(성산동)	02-336-3100	아동·성인	지체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보호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02-372-9394	성인(여성)	전장애
시립중랑장애인 단기보호센터 다운누리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61길	02-434-2114	성인(여성)	지적·뇌병변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 사이트(<http://disability.seoul.go.kr/>) 또는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 참조
*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거주시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주몽재활원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69(상일동)	070-8255-0315	아동
암사재활원	서울시 강동구 암사3동 196-1	02-441-0407	아동
디딤자리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72-101	02-987-6009	영유아(0~6세)
심터요양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31-41	02-937-5057	성인(19~45세)
늘편한집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308-3	02-933-5228	성인
천애재활원	서울시 노원구 중계로 163	02-930-4635	지체
승가원장애아동 요양시설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5가 10-1	02-921-6410	아동
가브리엘의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102-19	02-757-1511	아동·성인
영락애니의집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70	02-754-8507	아동
루디아의집	경기도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76-1	031-581-1215	아동·성인
한사랑장애영아원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333	031-764-3117	영유아 (6개월~4세)
한사랑마을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신월리 333	031-764-2115	아동·성인
향유의집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490	031-981-0909	성인
효정비전타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상백로 648	031-323-0030	성인
생수의집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155-5	031-536-0585	성인

*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 참조
*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대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1)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으로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할,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2) 지원내용

자립생활 지원: 개인위생, 건강, 식생활, 의생활, 가사관리 등
 사회적응 지원: 사회편의시설 활용, 대중교통수단 활동, 대인관계, 성교육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 지원: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회행사와 활동 참여 등
 여가생활 및 직업생활 지원: 여가기술 습득, 취업알선 및 교육 등
 정서안정 지원: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 행동수정, 개별·집단·부모상담 등

3)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울시그룹홈지원센터 ☎02-756-7060(www.ghcenter.or)

*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공동생활가정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오뚜기하우스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871-16 (온수동 10-27) 디아이빌 2차	02-932-4415	성인 남성

* 보건복지부 사이트(<http://www.mohw.go.kr/>) 참조

자립생활주택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인 또는 퇴소자

2) 지원내용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일정기간 동안 거주 하면서 지역사회 내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 입주인원: 1주택 당 2~3명 거주(1인 1실 기준)
 - 입주기간: 최장 7년 거주(6~12월 단위로 입주 및 연장 계약)
 - 주거형태: 아파트, 다세대/단독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3) 신청 및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1670-5755(www.welfare.seoul.kr)

자립준비에 도움을 주는 센터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5-1(구로중앙로18길60)	02-857-9501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67(신정3동) 양천벤처타운 603호	02-2608-2979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2태화빌딩3층	02-2252-9050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40가길 7 풍양빌딩	02-716-0302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43, 지하1층	02-812-2536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33-25 북부법조타운 302호	02-455-2887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07, 606호	02-959-5603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119길 6, 1층	02-3437-2092
해뜨는양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424, 303호	02-442-9664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664 대우베네시티 상가 411호	02-441-2313

복지시설

근로사업장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근로사업장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명
동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288-1	02-974-2950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그린내	서울시 서대문구 명지2길 14(홍은동 304-1)	02-303-4520	(사)한국재활재단
시립마천동미래형 직업재활시설 (굿월스토어)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28-1	02-6913-9100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종로구립 장애인 근로사업장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64-1	02-742-066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에덴하우스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195번길 47-20	031-946-1030	(사)복)에덴복지재단
형원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195번길 47-20	070-4369-7000	(사)복)에덴복지재단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 사이트(<http://disability.seoul.go.kr/>) 참조

보호작업장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장애인 근로사업장이 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신청 및 문의

시·군·구 장애인 담당부서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뇌성마비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보호작업장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나자로의집 보호작업장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4길 81	02-887-3629	지방자치단체 가톨릭사회복지회
사랑의일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51, 로템2빌딩 6층	02-3477-5111	(사)복)사랑의복지재단
라피드보호작업장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40길 16	02-6925-0728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참좋은센터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56길 99-15	02)491-3773	(사)복)유린보은동산
원광보호작업장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56	02)438-2605	(사)복)유린보은동산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 사이트(<http://disability.seoul.go.kr/>) 참조

재활병원

재활병원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안강병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323 지하1층, 1층(역삼동, MTU빌딩)	02-501-8871
더조은병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5 (논현동)	02-591-3777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언주로 211	1599-6114
청담병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7길 46 (청담동, 지하1층, 1층일부, 2층~6층)	02-2104-2000
삼성서울병원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02-3410-2114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2	1577-5800
주몽재활의원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69	070-8255-0355~7
강동성심병원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50	02-2224-2441~2
러스크강동병원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96 (명일동)	02-3426-0100
청병원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546 (성내동, G.M.F.빌딩)	02-2202-3114

재활병원

재활병원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보훈병원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	02-2225-1111
성신병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81 (미아동)	02-986-1313
대한병원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01	02-903-3231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수유동, 국립재활원)	02-901-1700
강서솔병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9	02-2064-7575
솔병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9 (방화동)	02-2064-7575
큰나무병원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9-7,2,4,5,8층 (가양동)	02-3664-1155
조인트힐병원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15 (신림동)	02-1899-7272
심정병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485 2층~5층(신림동, 삼남빌딩)	1588-3330
연세건우병원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4 3.4.9층 (봉천동, 대연빌딩)	1644-4630
SRC부설의원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722-19	02-871-3636
건국대학교병원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1	1588-1533
제니스병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215 (구의동)	02-3436-8888
해민병원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85 (자양동)	02-453-3131
씨티병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176 (오류동)	02-2615-5005
고려수재활병원(구로)	서울시 구로구 공원로6가길 4	02-1577-2588
고려대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8	1577-9966
인제대학교부속 상계백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342	02-950-1114
새서울병원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678 2층 (상계동, 모아빌딩)	02-930-5858
을지병원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1899-0001
바로선병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28 (창동)	070-4022-6832
도봉병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720 (방학동)	02-3492-3250
한일병원	서울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02-901-3114
경희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02-958-8114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82	1577-3675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80	02-958-2114
하늘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327 (답십리동)	02-1544-7588
맑은수병원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3길 44 (장안동)	02-2681-0119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02-870-2114
연세바른병원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300 3층, 4층(사당동)	02-1544-8235
중앙대학교병원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102	02-6299-1114

재활병원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 재활병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상암동 1738)	02-6070-9000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1599-1004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1588-1511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260 (내곡동)	02-570-8000
연세사랑병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0 (방배동)	02-3473-0114
서울중앙병원	서울시 성동구 금호산길 41 (금호동2가)	02-2231-7761
성동재활의원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43 성수문화복지회관 1층	02-2204-9970
한양대학교 의대부속병원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2-2290-8114
서울척병원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길음동)	02-940-2000
우신향병원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9 (안암동5가)	02-926-7505
고려대학교의대부속 안암병원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1577-0083
성북중앙병원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72 (종암동)	02-919-3404
주사랑병원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41 (장위동)	02-912-9004
국립경찰병원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355
서울초이스병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579 (풍납동)	02-473-0620
선수촌병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76 (잠실동)	02-1661-3379
서울아산병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1688-7575
라온휴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164 8층 9층 (신월동, 송일뷰티타워)	02-2601-2611
제인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4길 6 (신정동, 학마을아파트)	02-3408-2100
서울특별시서남병원	서울시 양천구 신정이편1로 20 (신정동)	02-1566-6688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71	02-2650-5114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1661-7575
명지춘혜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223 (대림동, 명지춘혜병원)	02-3284-7777
명지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156	02-829-7777
성애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02-840-7114
한림대학교부속 한강성심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02-2639-5114
서울으뜸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59 2-4층 (양평동1가, 엠에스빌딩)	02-2676-0606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02-709-9114
금강아산병원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18 (이촌동)	02-799-5000

재활병원

병원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재활병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구산동)	02-383-0916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7길 49 (역촌동)	02-3156-3064
서울특별시은평병원	서울시 은평구 백련산로 90 (응암동)	300-8053
연세노블병원	서울시 은평구 서오릉로 37 (녹번동)	384-0009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2114
강북삼성병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29	02-2001-2001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	02-2002-8000
로이병원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5 5층 (평창동, 글로리아타운)	1644-7541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18-79)	1588-1775
프라임병원	서울시 중랑구 공릉로 76 (목동)	02-975-7500
노정형외과병원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476 (망우동)	02-2209-6677
녹색병원	서울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3	02-490-2000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156	02-2276-7000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02-2036-0200

장애인치과

치과명	소재지	전화번호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방화동 452-5)	02-2662-3491~4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내 치과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길 96 (상계6.7동 771)	02-932-4412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내 치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94 (상암동 1738)	02-6070-9171
서울시장장애인치과병원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07	02-2282-0012
더스마일치과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40길 16	02-6925-4815
푸르메치과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89 (신교동 66번지)	02-6395-7020

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센터명	소재지	전화번호
강남서초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28	02-459-1013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65길 90	02-3665-0806~7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본원)	서울시 구로구 남부순환로 105길 218	02-861-2416
남부 특수교육지원센터(분원)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5길 10	02-2038-2700
북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6길 42	02-956-1038
동작관악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길 14	02-833-2895
서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은평구 가좌로 6길 20	02-715-0953
성동광진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8길 6	02-2292-6411
성북강북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08	02-911-1078
강동송파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6길 8	02-414-2634
중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50길 13	02-2278-6587~8
동부 특수교육지원센터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 138길 27	02-433-4327

장애전담어린이집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유형
까리타스어린이집	서울시 강북구 노혜로 29 (수유동 10-3)	02-996-1555	법인·단체등
성민장애아동어린이집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549 (삼성동)	02-875-0960	법인
아나올장애아어린이집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93(구로3동 256-7)	02-852-1628	국공립
에덴장애아어린이집	서울시 구로구 고척로21가길 84-35(개봉1동 50-8)	02-2625-9403	법인·단체등
초록어린이집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6.7동)	02-951-6118	국공립
두발로어린이집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2길 25 (창동 448-1)	02-999-2855	법인
해바라기어린이집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59바길 10 (창동 582-40)	02-999-0691	민간
우리마포어린이집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6길 10 (대흥동)	02-702-3100	국공립
구립 신록장애아어린이집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16길 27 (목1동)	02-2643-6554	국공립
서울베다니어린이집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5길 16-1 (신월1동)	02-2605-9237	민간

교육기관

특수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유형
주몽학교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 369	070-8255-0500	지체·지적
새롬학교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44	070-4612-4242	지체
서울정진학교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 9길 158	02-2688-1304	지체·지적
서울정민학교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24	02-978-8405	지체
한국우진학교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8길 21	02-304-6255	지체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02-2123-8141	지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 검색
 우측 하단 '지도검색' 클릭 → 해당 지역 클릭 → 시/군/구 선택하여 초·중·고등학교 검색 →
 우측 상단 '상세정보' 클릭 → '학생현황' 내 '학교현황' 클릭 → 특수학급 확인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
-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www.welfare.seoul.kr>)
-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happy.welfare.seoul.kr/happy/main.action>)
- ▶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dfscenter.welfare.seoul.kr/dfscenter/control/main/Counter.action>)
- ▶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sen.go.kr>)
- ▶ 강서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seo.seoul.kr>)
- ▶ 강서양천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n.go.kr/sedu/gangseo/index.do>)
-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il.kr>)
- ▶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http://www.koreanpc.kr>)
- ▶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 홈페이지(<http://k-boccia.kosad.kr>)
- ▶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홈페이지(<http://kofad.kosad.kr>)
- ▶ 대한장애인골프협회 홈페이지(<http://www.dpga.org>)
- ▶ 서울특별시장애인관광편의정보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amenity/>)
- ▶ 보건복지부 「2017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 문화체육관광부 「행복을 만들립하는 희망사다리 국민생활 서비스 정책 2017」
- ▶ 서울특별시 「당신에게 꼭 맞는 서울을 가지세요」
- ▶ 군자출판사(2013) 「뇌성마비」
- ▶ 군자출판사(2016) 「알기 쉬운 뇌성마비」
- ▶ 시그마프레스(2012) 「신경언어장애」

편집후기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을 제작하며...

우리 복지관은 뇌성마비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뇌성마비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뇌병변장애 중 뇌성마비의 비율이 8.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진국의 뇌성마비 유병률은 1,000명의 생존아 중 2.5~3명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뇌성마비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점에서 뇌성마비장애인만을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미 장애인의 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책이 발간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책이 모든 장애인을 포괄하고 있어 특정 장애유형에 대한 정보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러한 고민 끝에 뇌성마비장애인만을 위한 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가이드북의 기본적인 구성은 1장에 뇌성마비의 정의와 원인, 유형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2장에서는 영역별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3장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과 재활병원, 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료 및 다양한 가이드북 그리고 관련 서적을 참고하였으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차원을 넘어서 뇌성마비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뇌성마비장애인과 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뇌성마비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과 보호자 또는 뇌성마비장애와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매년 더욱 발전된 가이드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이드북

1판 1쇄 발행 2014년 12월 31일
2판 1쇄 발행 2015년 08월 31일
3판 1쇄 발행 2016년 11월 30일
4판 1쇄 발행 2017년 12월 20일

발행처 강서뇌성마비복지관
발행인 박세영
자문 가톨릭대학교 박희찬 교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방화동 452-5)
전화 02-2662-3491~4
팩스 02-2662-2700
홈페이지 www.grccp.or.kr
디자인 그래픽오션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강서뇌성마비복지관